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0. 20 선고 2021가단527503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백상

담당변호사 오영탁

변 론 종 결 2022. 9. 1.

판 결 선 고 2022. 10. 2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한 2019. 2.

18.자 매매계약은 46,988,949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6,988,9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E 주식회사(이하 ‘E’이라 한다)는 2018. 10.경 D에게 30,000,000원을 연 이율 20.9%, 연체이자율 23.9%로 각 정하여 대출하면서 담보로 (차량번호 1 생략) 맥시마 승용차(이하 ‘이 사건 승용차’라 한다)에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.

나. D는 2019. 2. 18.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합계 640,000,000원에 매도하였고,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9. 3. 8. 접수 제125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피고는 2019. 3. 8.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F조합에 332,751,101원, G 주식회사에 20,467,500원, 제주신용보증재단에 20,017,698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, D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66,763,701원을 지급하였다.

라. E은 2019. 3.경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차전4732호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2019. 3. 18.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마. 원고는 2021. 5. 20. E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, 6호증, 갑 제5호증의 1, 2, 을 제4, 6,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

가. 관련 법리

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,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,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,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

인정된다고 할 것이며,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·입증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).

나. 판 단

살피건대, E이 D에게 30,000,000원을 대여할 때에 이 사건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. 따라서 원고가 E로부터 양수한 D에 대한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데, 원고의 채권액은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 증가되고, 이 사건 승용차의 가격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,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.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주장을 할 뿐, 이 사건 승용차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·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.

3.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살피건대, 피고가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640,000,000원을 D에게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.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, 을 제2, 3호증의 각 1,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30,000,000원 상당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, ② 피고와 D 사이에 친인척 관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,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는 설령 D가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선의라고 봄이 상당하다.

결국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,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태진

별지목록

부동산의 표시

1.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/ 대 / 364㎡

2.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건물

[도로명주소]

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

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68.28㎡

부속건물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변소 2.4㎡

3.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/ 대 / 239㎡

4.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건물

[도로명주소]

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

잡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29.75㎡

